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03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임미애·박해철·주철현

박수현 · 김문수 · 최민희

이병진 • 이재강 • 문금주

김 윤 • 황명선 • 채현일

이해식 • 박용갑 • 송재봉

이광희 · 이용선 의원

(17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최근 시·도의 통합 등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 전략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시·도의 통합 등은 행정체계 변화로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을 "시·군 및 자치구를"로 하 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 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를 "제6항부터 제 9항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제1호 의"를 "제5항제1호의"로. "제4항제2호의"를 "제5항제2호의"로 하고. 같 은 항 후단 중 "제4항제1호에"를 "제5항제1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7 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에"를 각각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제4항"을 "제5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제4항"을 "제 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7항제1호에" 를 "제8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4항부 터 제7항까지의"를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에"를 "제10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종전의 제11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7항제1호에"를 "제8항제1호에"로 한다.

④ 시·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들어야 한다.

제6조제8항 중 "제5조제8항을"을 "제5조제9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도의 폐지·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도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 거나 합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
역) ① · ② (생 략)	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u>지방자치단체를</u> 폐지하거나	1. <u>시·군 및 자치구를</u>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시・도를 폐지하거나 설치
	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관계 지방의
	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u><u>5</u></u>
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부터 제8	<u>제6항부터 제9</u>
<u>항까지의</u> 규정에 따라 행정안	<u>항까지의</u>
전부장관이 결정한다.	
1.・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⑤</u> <u>제4항제1호의</u> 경우에는	<u>⑥</u> 제5항제1호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 한 법률 | 제28조에 따른 매립 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 허관청"이라 한다)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 기 전에, 제4항제2호의 경우에 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에 따른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에서 "지적소관청"이라 한다) 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각각 해당 지역의 위치, 귀속희 망 지방자치단체(복수인 경우 를 포함한다) 등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 항제1호에 따른 매립지의 매립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 해당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 단체의 결정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⑥행정안전부장관은제5항에따른신청을받은후지체없이제5항에따른신청내용을2

<u>제5항제2호의</u>
<u>제5</u>
항제1호에
<u>⑦</u> <u>제6항에</u>
a - a a
<u>제6항에</u>

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알리는 방법, 의견 제출 등에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u>제6항에</u> 따른 기간이 끝나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지적소관청,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 2. <u>제6항에</u> 따른 기간 내에 신 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 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u>⑧</u> <u>제7항에</u>
1. <u>제7항에</u>
<u>제5항</u>
2. <u>제7항에</u>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내용에 따라 <u>제4항</u> 각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 1호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 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 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 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이나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 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
- 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u>제9항에</u> 따른 소송 결과 대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따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각

제5항
 ⑨제8항제
<u>⑨</u> <u>제8항제</u> 1호에
<u>.</u>
<u>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u>
 ①제10항에
 ① <u>제5항</u>

호의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 체 결정과 관련하여 제7항제1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관 계 시・군 및 자치구 상호 간 매립지 조성 비용 및 관리 비 용 부담 등에 관한 조정(調整) 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 권으로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 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 ⑦ (생략)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8항을 준용한다.

<u>제8항제1</u>
호에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8
제5조제9
<u> 항을</u>

9 · 10 (생략)

⑨ · ⑩ (현행과 같음)